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항: ①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③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
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: 2025. 2. 11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, 포트폴리오 집중위험, 액티브상장지수펀드투자위험, 추적오차발생위험, 시장위험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, 포트폴리오 집중위험, 액티브상장지수펀드투자위험, 추적오차발생위험,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12. 31. 기준</u> <u>2024. 12. 31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2. 31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1. 2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1. 2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1. 2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 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 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 니다.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 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 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 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 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 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 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 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 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 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 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

		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</u> 가 <u>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					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	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	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		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계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1)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〈신 설〉	1)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〉</u> <table><tr><td rowspan="2">중도 환매 불가</td><td colspan="2">중도환매 허용</td></tr><tr><td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</td><td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 지 않음</td></tr><tr><td>-</td><td>-</td><td>○</td></tr></table>	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 지 않음	-	-	○
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								
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 지 않음									
-	-	○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12. 31. 기준</u> <u>2024. 12. 31. 기준</u>								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					
1. 재무정보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2. 31. 기준</u>								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2. 31. 기준</u>					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2. 31. 기준</u>					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- 의결권 행사 현황 : <u>2023.6 월~2024.5 월 기준</u>								

라. ESG 투자전략의 이행 현황 및 운용실적 2)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의 이행현황			- 기타 주주활동 이행 현 황 : <u>2023.7 월~2024.4 월</u> <u>기준</u>
--	--	--	---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12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12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12. 31. 기준</u>